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-654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7월 13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
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

1. 개정이유

본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, 이후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」는 본 조례와 주요 내용 전부가 중복되고, 본 조례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례로, 본 조례의 존치에 실익이 없어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본 조례는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」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그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,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 및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으며, 도시공원과 주택단지 외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관리토록 관리시설 범위를 확대한 조례로써, 본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는 그 존치에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

3. 의견제출
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: 공원녹지과장, 전화: 450-7775, fax: 3425-1726, e-mail: kjueun@seoul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대표자)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
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[전문]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,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공원”이라 함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.

2. “어린이놀이터”라 함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

이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30조제1항의 사무관할구분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.

제4조(관리·지원계획 수립)

-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(이하 “어린이공원 등”)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·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관리·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
 2.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등
 3.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지도
 4.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(교체, 뒤집기, 보충 등)
 5.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동반할시에는 목줄착용 및 비닐지참
 6.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
 7.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(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

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)

8.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

제5조(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)

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. 다만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(조치 및 협조요청)

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적출된 사항을 당해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원봉사활동 등)

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‘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’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지원)

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업무의 분담)

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0조(표 창)

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